



제 안 설 명

○ 「빈집실태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고 령 군
(건축과)

건축과장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축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 「빈집실태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협약 체결의 목적은

관내 빈집실태 조사를 통해 빈집현황의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59조의5에 의거

빈집실태조사 대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의거 5년마다 재조사하며,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상세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빈집의 활용도 제고 및 주거여건 개선과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합니다.

이상으로 「빈집실태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일

건축과장 김 광 호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02. . (제 회)	

「빈집실태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제출자	고령군수 (건축과장)
제출연월일	2025. 02. .

빈집실태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I 사업목적

- 관내 빈집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통해 빈집현황의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
- 빈집의 상세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군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빈집의 활용도 재고 및 주거여건 개선 기여

II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 최초 2021년도 실태조사 완료 / 5년마다 재조사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사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 조사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 추정동수 : 600동(조사 중 물량의 증감발생 가능)

- 소요예산 : 48,000천원 (600동 × 80,000원)
- 추진방식 : 한국부동산원 위탁(농어촌정비법시행령59조의5에 의한 대행기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5(빈집실태조사 대행기관)>

- ① 한국농어촌공사 ② 한국국토정보공사 ③ 한국부동산원 ④ 한국어촌어항공단
 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⑦ 국토연구원 ⑧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한국부동산원(전신 한국감정원)

-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 주요사업 :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조사·통계, 도시정비사업(빈집정비사업) 등

■ 협약서(안)

고령군 빈집실태조사 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라 빈집 실태 파악을 통해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고령군 빈집실태조사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위탁자 고령군(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 한국부동산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이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의2 및 이 협약에 따라 위탁자가 위탁하고 수탁자가 수행하는 빈집실태조사를 말한다.
2.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3. “사업비”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빈집실태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사업은 법에서 정하는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고령군 관내 600호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총 사업비 : 금 사천팔백만원[금48,000,000원, 부가세포함]

<사업비 산출내역> 80,000원 × 600호 = 48,000,000원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본 협약서에 각각 날인한 날부터 10개월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단축·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범위) 이 협약과 관련한 위탁자와 수탁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자의 업무

- 가.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부담
- 나. 사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다. 상기 각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2. 수탁자의 업무

- 가.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 운영 및 관리
- 나. 사업의 관리·감독 및 관련 제반사항 운영
- 다. 결과보고 및 자료제공 협조
- 라. 상기 각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제7조(사업비 청구 및 지급)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사업비를 위·수탁 협약서 체결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은 표본 당 단가계약이며 완료 시 정산내역서는 완료계와 성과품 제출로 대체한다.

제8조(성실의무 등)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자의 소관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 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본 협약에 의거한 사업성과 관련 정보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열람, 누설, 복사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협약의 해지)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 2.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 3. 수탁자가 업무수행 중 위탁자와 사전협의 없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4. 과업 공정기간이 현저하게 늦어지는 경우
- 5.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협의사항) ①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위해서 위탁자와 협의 후 수탁자 주관하여 수탁자의 자회사 등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본 협약서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 및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시(도)의 해석에 따르며, 행정안전부와 관할 시(도)의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다.

제11조(자료제공 등) 수탁자는 본 업무 수행 중 취득 또는 작성한 자료 등에 대하여 위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협약서 작성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조 (효력발생) 본 협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5년 2월 일

“위탁자” **경 상 북 도 고 령 군 수** (인)

“수탁자” **한 국 부 동 산 원 원 장** (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건축과	
연 락 처	(054)950-6091